

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7. 4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6월 18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6월 18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6차 시민행정위원회(2007. 7. 4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김 윤 수)

가. 제안이유

- 「식품위생법」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용자대상에 집단급식소를 포함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,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변경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회계관계공무원 변경
 - 기금운용관 : 보건소장 → 보건위생과장
 - 기금출납원 : 보건위생과장 → 식품위생담당주사
- 기금·용자대상에 위탁운영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추가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